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김재진 의원 외 19명
- 나. 의안번호: 제1689호
- 다. 제출일자: 2024. 4. 3.
- 라. 회부일자: 2024. 4. 8.

2. 제 안 사 유

- 현재 진행 중인 한강 이야기전시관 및 서울형 키즈카페 공사로 상상마루 (뚝섬 자벌레 서울생각마루 3층) 운영이 2023년 8월 종료됨에 따라 이용료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 또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 봉투 중 100ℓ 봉투 제작을 금지함에 따라 가격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근거 조항을 수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별표 1 제5호 중 서울생각마루 부분을 삭제함.

나. 별표 2 제5호 중 상상마루 기준 및 이용료를 삭제함.

다. 별표 4 한강공원 쓰레기규격봉투 가격 중 100ℓ 부분을 삭제함.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이 중단된 뚝섬 자벌레 내 상상마루 이용료 관련 사항과 제작이 금지된 100L 종량제봉투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것임.

나. 세부 검토 의견

1) 자벌레 공간 시설 이용료 규정 삭제 관련

- 뚝섬 자벌레 내 ‘상상마루’는 이용료를 받고 회의실 용도로 대관해 주던 공간이나 자벌레를 복합문화공간¹⁾으로 재조성하는 계획에 따라 2023년 8월부터 운영이 중단된바, 관련 이용료 기준을 삭제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는 것은 타당할 것임.

다만, 미래한강본부가 운영이 중단된 시설의 이용료 기준을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후 조례 개정 사항 발생 시 적기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조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2) 폐기물 수거용 봉투 규정 삭제 관련

-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이하 “시행지침”)에 따라 관리 중인데, 2022년 1월 수거 관련 근무자의 작업을 수월하게 한다는 취지로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100L 규격의 종량제봉투 제작을 금지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100L 종량제봉투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도록 100L 종량제봉투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현행 시행지침을 준용하고

1) 뚝섬 자벌레를 한강이야기전시관(1,3층) 및 서울형 키즈카페(2층)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

수거 관련 근무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2022년 1월 시행지침 개정 이후 서울시 자치구 및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데 반해 미래한강본부는 아직도 100L 종량제봉투를 제작·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시행지침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거 근로자 작업 환경 개선에 반하는 행정행위라 할 것임.

[별첨]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22.01, 환경부)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 관리지역에 적용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적용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

-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며, 이외에 처리 방법에 따라 매립용(불연성), 소각용(가연성) 봉투로도 구분·제작 가능
 - 일반용 봉투 용량: 1L, 2L, 3L, 5L, 10L, 20L, 30L, 50L, 75L
 - 재사용 종량제봉투: 3L, 5L, 10L, 20L, 30L
 - 공공용 봉투 용량: 30L, 50L, 75L
 -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 용량: 3L, 5L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봉투는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에 비해 무거워 환경미화원 수거작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100L 봉투 제작을 금지